



창원레포츠파크 회의실

'22.12.22.(목), 15:00

## 2022년 창원레포츠파크 제6회 이사회 의 결 결 과

○ 2023년도 당초예산안	원안가결
○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2년도 노·사 임금 협상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연봉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호
의안제목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사회부의안

## 1. 제안이유(예산편성 근거)

### □ 예산편성 근거에 따른 2023년도 창원레포츠파크 당초예산 편성

- 창원시 예산담당관-8052(2022.7.22.)호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통보」
- 「지방공기업법」 제23조(예산의 편성) 및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 기획홍보팀-2068(2022.9.21.)호 「2023년도 당초예산편성 계획(안)」

## 2. 주요내용(편성방향)

### □ [경륜사업] 전년도 예산 대비 **458,700천원** 감액 편성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1,000,000천원 증액 편성
  - 창원자체 경주 수 증가로 경주운영 직접경비(선수상금, 선수동 운영비 등) 증가
- 기타경륜 대행사업비 1,458,700천원 감액 편성
  - 경주장 운영시설 또는 경주운영 각종 장비 보수·교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노후화 장비 또는 시설물 보수·교체 위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

### □ [누비자사업] 전년도 예산 대비 **45,000천원** 증액 편성

- 전년도 사업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 인건비성 경비(67.6%), 일반경비(25.0%), 자본예산(7.4%)
- 『청년대상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금』 신규편성(45,000천원)
  -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추진 사업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지원대상 : 2023. 3월 ~ 12월 / 만19세 ~ 34세 청년
- 지원인원/내용 : 1,500명 / 누비자 1년 이용요금 지원(연간회원 가입비 30,000원)

### □ [신규사업] 전년도 예산 대비 **544,355천원** 신규편성

-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대행사업비 231,437천원 편성
  - 인건비성 경비(85.3%), 일반경비(13.4%), 자본예산(1.3%)
-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312,918천원 편성
  - 인건비성 경비(84.4%), 일반경비(11.9%), 자본예산(3.7%)

### 3. 주요내용

#### □ 예산규모 : 총29,860,805천원 [전년대비 ↑ 130,655천원]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 22,500,000천원
- 기타경륜 대행사업비 : 571,300천원
-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 6,245,000천원
- 신규사업 대행사업비 : 544,355천원
  -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 231,437천원
  -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 312,918천원
-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 150천원

<<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증감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b>총 계(A+B)</b>		<b>29,860,805</b>	<b>29,730,150</b>	<b>130,655</b>
특별회계(A)	소 계	23,071,300	23,530,000	△458,700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22,500,000	21,500,000	1,000,000
	기타경륜 대행사업비	571,300	2,030,000	△1,458,700
일반회계(B)	소 계	6,789,505	6,200,150	589,355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6,245,000	6,200,000	45,000
	신규사업 대행사업비	544,355	0	544,355
	도비보조금 이자반환액	150	150	0

#### □ 주요증감 사유[총괄]

(단위 : 천원)

관	항	세항	목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 (A - B)	주요증감 내역
				세목					
<b>총 계</b>				<b>29,860,805</b>	<b>29,730,150</b>	<b>130,655</b>			
		101	인건비	10,504,831	10,240,609	264,222			
		01	보수	4,240,005	4,167,421	72,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 보수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 직무, 연차, 시간외수당 등 공무원 보수 1.7% 인상 : (22년) 1.4% → (23년) <b>1.7%</b></li> </ul> </li> <li>· (경륜예산) 전년대비 보수 <b>△25,880천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년퇴직자 발생분 반영('22 ~'23년 상보기 : 2명)</li> </ul> </li> <li>· (공영자전거) 전년대비 보수 <b>△64,419천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년퇴직자 발생분 반영(1명)</li> </ul> </li> <li>· (신규사업) <b>162,883천원 신규편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토캠핑장) 일반직 1명 편성(8급)</li> <li>- (인공암벽장) 일반직 2명 편성(4급, 6급)</li> </ul> </li> </ul>

(단위 : 천원)

관	항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 (A - B)	주요증감 내역
		세항	목				
		02	기타직보수	384,224	373,925	10,2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봉계약직 보수 편성</li> <li>- 급여, 직무, 연차, 시간외수당 등 공무원 보수 1.7% 인상 : (22년) 1.4% → (23년) 1.7%</li> <li>· (경륜예산) 전년대비 <b>△36,013천원</b></li> <li>· (공영자전거) 전년대비 <b>↑46,312천원</b></li> <li>- 2022년 4월, 경륜에서 공영자전거팀으로 발령(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예산) 전년대비 <b>△52,134천원</b></li> <li>- 정년퇴직자 발생분 반영('22 ~'23년 상반기 : 10명)</li> <li>· (공영자전거) 전년대비 <b>△3,183천원</b></li> <li>- 퇴직자 2명분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 <b>170,829천원 신규편성</b></li> <li>- (오토캠핑장) 공무직 4명(104,900천원)</li> <li>- (인공암벽장) 공무직 2명(65,929천원)</li> </ul>
		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80,827	15,000	65,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예산) 전년대비 <b>↑58,200천원</b></li> <li>- 청년인턴 4명 채용 예정(심판 및 방송보조원)</li> <li>· (신규사업) 달천공원 1명 <b>7,627천원 신규편성</b></li> </ul>
		107	퇴직급여	1,303,591	1,389,429	△85,838	
		109	평가급 및 성과급등	614,240	470,694	143,5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급 예산편성은 <u>전년도 지급률 기준</u>으로 편성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li> <li>※ 22년도 지급률 : (이사장) 101%, (상임이사) 100%, (직원) 180%</li> <li>- 【이사장】 22년도 140% 편성 → 23년도 <b>101% 편성</b></li> <li>- 【상임이사】 22년도 140% 편성 → 23년도 <b>100% 편성</b></li> <li>- 【일반직·계약직】 22년도 140% 편성 → 23년도 <b>180% 편성</b></li> </ul>
		201	일반운영비	5,105,051	5,000,472	104,579	
			01	사무관리비	417,473	409,4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예산) 전년대비 <b>↑5,830천원</b></li> <li>- 종이값 상승으로 &lt;구매표 및 룰지&gt; 예산 증액</li> <li>· (신규사업) <b>15,181천원 신규편성</b></li> <li>· (공영자전거) 전년대비 <b>△12,992천원</b></li> </ul>
			02	공공운영비	858	4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절감 편성</li> </ul>
			03	행사운영비	77,670	80,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절감 편성</li> </ul>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 (A - B)	주요증감 내역
관	항	세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바일 토티링크(TOTELINK) 유지보수』 신규 편성 : <b>98,340천원</b></li> <li>- 모바일 전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취득 및 기술 지원 계약</li> <li>- 모바일 전자카드시스템 150대 기준, 월 <b>8,195천원</b> 지급</li> <li>· 기타 선수동 의무실 위탁비 등 전년대비 <b>↑3,429천원</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 교육훈련비 60,200 56,350 <b>3,850</b> · 더존ERP(회계, 인사, 급여 등)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 임차료 340,731 329,447 <b>11,284</b> · 『김해지점 월 임차료』 전년대비 <b>△13,454천원</b></li> <li>- 2022년 2월, 건물 임대차 계약변경으로 월 임차료 감소</li> <li>· 『공기청정기 임차료』 22대 <b>13,680천원</b> 신규편성</li> <li>- 20평형 15대 (단가 월55,000원)</li> <li>- 10평형 7대 (단가 월45,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회의비 1,536 2,528 <b>△992</b> · 예산절감 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복리후생비 794,826 787,157 <b>7,669</b> · (경륜예산) 전년대비 <b>△3,848천원</b></li> <li>- 직원 『건강 검진비』 4,800천원 감액</li> <li>- (22년도) 검진대상 48명 → (23년도) 24명</li> <li>· (공영자전거) 전년대비 <b>△7,832천원</b></li> <li>- 급식보조비, 교통비 4,800천원 감액</li> <li>- (22년도) 8명 → (23년도) 6명</li> <li>· (신규사업) <b>19,349천원</b> 신규편성</li> <li>-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 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공공요금 및제세 1,080,583 1,091,052 <b>△10,469</b> · 『사감위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전년대비 <b>↑32,350천원</b></li> <li>** 부담금 = 전년도 순매출액 × 기본부담비율 0.35% × 감면비율(최대 40%까지 감면)</li> <li>- 2021년도 순매출(21,655백만원) 대비 2022년도 순매출액 증가(53,500백만원 정도 예상)</li> <li>※ 2021년도 휴장 63일, 온라인발매 8월 이후 시행 → 2022년도 휴장 없음</li> <li>· 경륜선수 재활지원금 <b>40,000천원</b> 미편성</li> <li>- 23년도 부터 경륜선수 전원 &lt;신재보협&gt; 가입 동의에 따라 경륜선수 재활지원비 별도 편성 불필요</li> <li>·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전년대비 <b>△2,819천원</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 차량·선박비 252,897 266,673 <b>△13,776</b> · (경륜예산) 공단버스 미운영 예정에 따라 차량유지비 미편성</li> <li>· (공영자전거) 누비자 업무용 차량 정비비 감액 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 여비 22,000 23,000 <b>△1,000</b> · 예산절감을 위한 여비 감액 편성</li> </ul>

(단위 : 천원)

관	항	세항	목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 (A - B)	주요증감 내역																
				세목																					
			204	직무수행경비		172,435	161,040	11,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륜예산)『직급보조비』 전년대비 ↑18,460천원</li> <li>- 전년도 예산 대비 &lt;3급&gt; 1명↑, &lt;6급이하&gt; 6명↑ ⇒ 12,000천원 증가</li> <li>- 전년도 예산 대비 &lt;4급&gt; 1명↓, &lt;5급&gt; 1명↓ ⇒ 3,540천원 감소</li> <li>(공영자전거) 직급보조비 전년대비 △3,720천원</li> <li>(신규사업)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 <b>6,655천원 신규편성</b></li> </ul> <p>&lt;&lt; 직급보조비 지급표 (단위: 천원) &gt;&gt;</p> <table border="1"> <thead> <tr> <th>이사장</th><th>상임이사</th><th>3급</th><th>4급</th><th>5급</th><th>6급이하</th></tr> </thead> <tbody> <tr> <td>650</td><td>550</td><td>250</td><td>155</td><td>140</td><td>125</td></tr> </tbody> </table>	이사장	상임이사	3급	4급	5급	6급이하	650	550	250	155	140	125				
이사장	상임이사	3급	4급	5급	6급이하																				
650	550	250	155	140	125																				
			206	재료비		319,488	419,152	△99,6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륜예산) 전년대비 △95,464천원</li> <li>- 고객식당 아웃소싱으로 식재료비 미편성(△71,040천원)</li> <li>- ESG경영실천을 위한 핸드타월 미구입(△4,900천원)</li> <li>- 커피 자동판매기 재료비 등 △19,524천원</li> <li>(공영자전거) 전년대비 △6,000천원</li> <li>(신규사업) 전년대비 <b>1,800천원 신규편성</b></li> </ul>																
			214	수선유지교체비		806,932	671,550	135,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륜예산) 전년대비 ↑52,789천원</li> <li>- 김해지점 UPS축전비 교체비 신규편성(13,500천원)</li> <li>- 방송장비, 각종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액</li> <li>(공영자전거) 전년대비 ↑73,000천원</li> <li>- 누비자 단말기(태양광 패널 포함) 구입 ↑105,000천원</li> <li>-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수선비 증액(↑23,000천원)</li> <li>(신규사업) <b>9,593천원 신규편성</b></li> </ul>																
			215	동력비		900,991	813,176	87,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가스 등 요금인상</li> <li>- '22. 8월 이후 도시가스 27%이상 인상</li> </ul>																
			301	일반보전금		7,181,284	6,266,121	915,163																	
			12	기타보상금		7,179,462	6,215,241	964,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도 선수상금 지출 수준으로 편성</li> </ul>																
			303	포상금		10,700	8,100	2,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륜예산) 유공 및 모범직원 표창 등 ↑800천원</li> <li>(공영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등 모범직원 포상금 전년대비 <b>↑1,800천원</b></li> </ul>																
			304	연금부담금등		1,262,160	1,192,217	69,943																	
			01	연금부담금		520,303	496,322	23,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담금 = 기준보수월액 × 4.5%</li> <li>※ (22년 요율) 4.5% → (23년 요율) 4.5%</li> </ul>																
			02	국민건강 보험부담금 등		741,857	695,895	45,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담금 = 기준보수월액 × 요율</li> <li>-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2년도 3.93% → 23년도 4.0%</li> <li>- (고용보험금) 22년도 1.55% → 23년도 1.55%</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금) 22년도 0.8% → 23년도 0.82%</li> <li>※공영자전거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0.93%</li> </ul>																

관	항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 (A - B)	주요증감 내역		
		세항	목				세목		
		306	출연금	18,500	16,700	1,800			
			13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18,500	16,70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 동법 시행령 76조</li> <li>- &lt;직원수&gt;, &lt;매출액&gt;, &lt;자산&gt; 기종치 부여 산정</li> <li>- 전년도 대비 &lt;자산&gt; 증가로 분담금 증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자산</th> <th>산정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0억원 미만</td> <td>18백만원</td> <td>22년도 지급기준, 자산 9.9억원 &lt;결산기준&gt;</td> </tr> <tr> <td>10억원~ 100억</td> <td>36백만원</td> <td>22년도 지급기준 자산 13억원 &lt;결산기준&gt;</td> </tr> </tbody> </table>	자산
자산	산정금액	비고							
10억원 미만	18백만원	22년도 지급기준, 자산 9.9억원 <결산기준>							
10억원~ 100억	36백만원	22년도 지급기준 자산 13억원 <결산기준>							
726	상품매입비	348,552	376,320	△27,7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가상승으로 인한『매점(2개소)운영 판매상품 구입』 전년대비 ↑10,248천원</li> <li>『음료 자판기 판매상품 구입』 △38,016천원</li> <li>- 2022년도 대비 음료자판기 16대 → 8대 운영</li> <li>-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종복으로 판매수량 조정</li> </ul>			
770	영업외비용	56,150	2,150	54,000					
	10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50,000	0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사이클팀(감독1명, 선수3명) 운영비</li> <li>- 전년도 &lt;영업비용&gt;으로 편성했던 5천만원을 &lt;영업외비용&gt;으로 과목경정하여 편성</li> <li>→ 신규사업이 아닌 <u>계속사업</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기업 ESG경영 실천을 위하여 기부금 증액</li> </ul>			
318	기부금	6,000	2,000	4,000					
	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0	15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사이클팀 운영 도비보조금 이자 발생분 편성</li> <li>- 3~4월경 반납</li> </ul>			
233	건물	247,620	1,828,000	△1,580,380					
	01	시설비	247,620	1,828,000	△1,580,380	<2023년도 시설비 편성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인발매창구 설치공사(본장 2~3층) 신규편성 (↑70,000천원)</li> <li>경륜장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 신규편성(↑98,620천원)</li> <li>시설물 환경개선공사 신규편성(↑79,000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륜예산) 공단 노후차량 교체 구입 신규편성 (1대, 수소차)</li> <li>- 내구연한 초과(2008년 구입, 내용연수 9년)된 차량으로 유지비용 점차적 증가</li> <li>- 차량기액 75,562천원 정도, 차량보험료 등 5,528천원</li> <li>→ 차량구입 후 창원시 보조금 신청 예정</li> </ul>			
236	차량운반구	81,090	0	81,09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090	0	81,090				

(단위 : 천원)

관	항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 (A - B)	주요증감 내역
		세항	목				
		237	공기구비품	679,090	579,900	99,190	<2023년 자산취득비 편성내역> · 전자카드 노후 단말기 교체구입(30대) 신규편성(60,000천원) · 전자카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구입 신규편성(85,500천원) ·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비 신규편성(100,000천원) · 경주영상 백업시스템 교체구입비 신규편성(20,000천원) · 노후의자 교체 구입 신규편성(21,900천원) · 경륜장 고객 회장실 핸드드라이어 구입 신규편성(8,280천원) · 노트북구입 및 지폐 계수기, 소속기 구입(6,960천원) ·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누비자 구입 등(361,900천원) · (신규사업) 책상, 위자 등 기본적 업무용 비품 구입(14,550천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9,090	579,900	99,190	
			11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100,700	140,000	△39,300	· (공영자전거) 서버보안 시스템 및 로그파일 시스템 구입 등 100,700천원
		800	자본예산 예비비	4,000	4,000	0	

## □ 예산규모 및 증감(사업별)

###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단위: 천원)

분류	내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주요증감 내역
	총 계	22,500,000 (100.0%)	21,500,000 (100.0%)	1,000,000	
인건비성 경비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및 성과금등, 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 4대보험, 복리후생비(교통비,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9,873,588 (43.9%)	9,860,822 (45.9%)	12,766	· 평가급 ↑98,140천원, 직급보조비 ↑8,460천원, 기간제근로보수 ↑58,200천원, · 퇴직급여 등 △152,214
	소 계	8,692,440 (38.6%)	7,732,453 (36.0%)	959,987	
경주운영 직접경비	선수상금	7,022,942	6,091,501	931,441	· 22년도 선수상금 지출 수준으로 편성
	선수동 운영	364,061	347,705	16,356	<전년도 대비 자체경주 증가> · 선수동 의무실(구급차 등), 선수식당, 선수동 숙소침구류 세탁비 등 증액
	경륜선수 복지 (산재·상해·연금보험, 유니폼 제공 등)	353,960	395,350	△41,390	· 경륜선수 재활지원비 미편성 (△40,000천원) - 산재보험과 중복편성 불필요
	전산·방송장비 사용료 및 유지보수	884,557	762,077	122,480	· 모바일 TOTELINK 유지보수비 신규편성
	구매표 및 경주권 룰지 제작	46,755	35,320	11,435	· 종이값 상승으로 증액 편성
	출주표 제작비	0	80,500	△80,500	· 2023년도부터 출주표 미제작
	기타	20,165	20,000	165	

(단위: 천원)

분류	내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주요증감 내역
고객편의 시설운영	소 계	453,664 (2.0%)	570,478 (2.6%)	△116,814	
	매점 운영(2개소)	327,048	316,800	10,248	· 물가상승으로 물품 매입비 전년대비 ↑ 10,248
	고객식당 운영(1개소)	0	71,040	△71,040	· 고객식당 아웃소싱 시행
	그랜드홀(5층) 운영	18,216	18,500	△284	· 예산절감 편성
	객장 자판기운영(커피, 음료)	94,360	144,696	△50,336	· 『음료 자판기판매상품 구입』 전년대비 △38,016천원 - 음료자판기 16대 → 8대 운영
	클리닉운영, 종합안내실 운영, 객장 고객용 정수기 제공, 방역소독 등	14,040	19,442	△5,402	· 예산절감 편성
자본예산	시설비, 자산취득비	88,050 (0.4%)	81,400 (0.4%)	6,650	
일반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관서업무비 등	3,328,258 (14.8%)	3,190,847 (14.8%)	137,411	· 동력비 ↑ 67,730천원 · 수선유지비 ↑ 43,789천원 · 기타 임차료 등 ↑ 25,892천원
공단 사이클팀 운영비	■ 공단 사이클팀 운영 - 감독1명, 선수3명	50,000 (0.2%)	50,000 (0.2%)	0	
예비비	일반 예비비	14,000 (0.1%)	14,000 (0.1%)	0	

## ○ 기타경륜 대행사업비

(단위: 천원)

분류	내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주요증감 내역
	총 계	571,300 (100.0%)	2,030,000 (100.0%)	△1,458,700	
수 선 유지비	천정형 F.C.U. 물받이판 교체	28,000 (4.9%)	19,000 (1.0%)	9,000	
시설비	무인발매 창구 설치공사(70,000천원) 경륜장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98,620천원) 시설물 환경개선공사(79,000천원)	247,620 (43.3%)	1,836,000 (90.4%)	△1,588,380	· 전년도 시설비 - 경륜장 외벽공사 1,600,000천원
자 산 취득비	경주영상 백업시스템 교체 구입(20,000천원) 전자카드 관련 구입비(145,500천원)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00,000천원) 투표소 노후 의자 교체 구입(21,900천원) 고객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8,280천원)	295,680 (51.8%)	175,000 (8.6%)	120,680	· 전년도 대비 전산관련 자산취득비 증액

## ○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단위: 천원)

분류	내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주요증감 내역
	<b>총 계</b>	6,245,000 (100.0%)	6,200,000 (100.0%)	<b>45,000</b>	
인건비성 경비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및 성과금등, 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 4대보험, 복리후생비(교통비,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4,224,039 (67.6%)	4,267,389 (68.8%)	<b>△43,35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직보수, 평가급, 4대보험료 증액(↑87,993천원)</li> <li>일반직 및 공무직 보수, 퇴직급여, 직급보조비 등 감액(△131,343천원)</li> </ul>
	<b>소 계</b>	1,558,361 (25.0%)	1,469,111 (23.7%)	<b>89,250</b>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재료비, 차량선박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42,811	959,061	<b>△16,25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력비, 임차료, 포상금 증액</li> <li>사무관리비, 교육훈련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등 감액</li> </ul>
	수선유지비	548,950	475,950	<b>73,00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비자 정비용 부품 구입비(↑30,000천원)</li> <li>누비자 터미널 수선용 부품구입(↑10,000천원)</li> <li>누비자 프레임 구입(↑10,000천원)</li> <li>각종 시설물 설치 및 수선비(↑23,000천원)</li> </ul>
일반 경비	기타보상금	66,600	26,100	<b>40,50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대상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금 <b>신규편성(45,000천원)</b></li> <li>창원시 추진 신규사업으로 23년도 1분기 보조금 지급예정(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li> </ul> <p>&lt;창원시 이용요금 지원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만19세~34세</li> <li>* 지원인원 : 1,500명</li> <li>* 지원내용 : 누비자 1년 이용요금 지원</li> <li>· 청소년대상 누비자 이용 회원권 지급 △4,500천원</li> </ul>
자본예산	시설비, 자산취득비	462,600 (7.4%)	463,500 (7.5%)	<b>△900</b>	

## ○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대행사업비 <신규편성>

(단위: 천원)

분류	내용	예산액	주요편성 내역
	<b>총 계</b>	<b>231,437 (100.0%)</b>	
인건비성 경비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및 성과금 등, 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 4대보험, 복리후생비(교통비,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197,299 (8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 1명, 공무직 4명, 기간제근로자 1명 반영 편성</li> <li>· 국민연금 4.5%, 국민건강보험 3.545%, 요양보험 12.27%, 고용보험 1.55%, 산재보상보험 0.818% 적용</li> <li>· 평가급 180% 편성</li> </ul>
일반 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여비, 일반재료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31,078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핑장 운영 직접경비 : 26,85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료, 상하수도료, 무인경비 시스템, 각종 점검 수수료, 각종 시설 수선유지비 등</li> </ul> </li> <li>· 기타 운영 경비 : 4,22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용품 구입, 여비, 업무추진비 등</li> </ul> </li> </ul>
자본예산	자산취득비	3,06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운영을 위한 기본적 업무용 비품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책상, 의자, 서랍 등</li> </ul> </li> </ul>

## ○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신규편성>

(단위: 천원)

분류	내용	예산액	주요편성 내역
	<b>총 계</b>	<b>312,918 (100.0%)</b>	
인건비성 경비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및 성과금 등, 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 4대보험, 복리후생비(교통비,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264,057 (8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 2명, 공무직 2명 반영 편성</li> <li>· 국민연금 4.5%, 국민건강보험 3.545%, 요양보험 12.27%, 고용보험 1.55%, 산재보상보험 0.818% 적용</li> <li>· 평가급 180% 편성</li> </ul>
일반 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여비, 일반재료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37,371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암벽장 운영 직접경비 : 29,979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료, 상하수도료, 무인경비 시스템, 각종 점검 수수료, 각종 시설 수선유지비, 크레인 임차 등</li> </ul> </li> <li>· 기타 운영 경비 : 7,392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용품 구입, 여비, 업무추진비 등</li> </ul> </li> </ul>
자본예산	자산취득비	11,490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운영을 위한 기본적 업무용 비품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책상, 의자, 서랍 등</li> </ul> </li> <li>· 인공암벽장 운영 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세척기, 신발장(암벽화 보관용) 구입</li> </ul> </li> </ul>

의안번호	제2호
의안제목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사회부의안

## 1. 추진배경

### □ 2022년도 대행사업비 결산추경

####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 사업기간 : '22. 1월 ~ 12월
- 경륜개최 종료에 따른 2022년도 경륜운영경비 집행잔액 감액  
\*경륜개최 총 53회차

#### ○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 사업기간 : '22. 1월 ~ 12월
- 누비자 사업 종료에 따른 2022년도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 ○ 주민참여예산 대행사업비

- 사업기간 : '22. 3월 ~ 12월
- 『자전거 주행교육장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 2. 주요내역

### □ 예산규모(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합 계(A+B)	29,693,691	30,100,150	△406,459
특별회계	소 계(A)	23,530,000	23,530,000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21,500,000 (경주) 12,800백만원 (비경주) 8,700백만원	21,500,000 (경주) 12,800백만원 (비경주) 8,700백만원
	기타경륜 대행사업비	2,030,000	2,030,000
일반회계	소 계(B)	6,163,691	6,570,150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5,800,000	6,200,000
	주민참여예산 대행사업비	93,541	100,000
	사이클팀 운영 도비보조금	270,150	270,150

대행사업비 증·감액 추경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별		증·감	재원조달 방법
		증액	감액		
합 계(A+B)		390,577	797,036	△406,459	· 기정예산 증·감 조정
특별회계(A)	경륜운영	252,577	252,577	0	· 기정예산 증·감 조정
일반회계(B)	공영자전거	138,000	538,000	△400,000	· 기정예산 증·감 조정
	주민참여예산	0	6,459	△6,459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증·감액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금회추경액 (A - B)	주요 증감내역
관	항	세항				
총 계(A+B)			21,500,000	21,500,000	0	
700	사업비용(A)		21,419,457	21,419,457	0	
	710 영업비용			21,121,708	21,356,165	△234,457
		722 대행사업비		20,771,070	20,999,527	△228,457
			100 인건비		7,807,711	7,892,615
				6,431,032	6,532,056	△101,024
			01	보수	3,504,914	3,519,914
						· 일반직 연차수당 집행잔액 감액(△15,000천원)
			03	무기계약 근로자 보 수	2,659,132	2,745,156
						· 공무직 급여 집행잔액 감액(△43,000천원) · 주휴수당 집행잔액 감액(△15,000천원) · 휴일근무 수당 집행잔액 감액(△10,000천원) · 교통비 등 각종 수당 집행잔액 감액(△18,024천원)
		109 평가급 및 성과금 등		516,912	500,792	16,120
						· 2022년도 퇴직자(3명) 평가급 지급(↑16,120천원) <행안부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근거> - 2022년도 평가급을 2021년도 실적(지급률 180%)으로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가능
	200 물 건 비		4,933,618	5,062,626	△129,008	
	201 일반운영비		3,379,795	3,469,772	△89,977	
		01	사무관리비	268,896	276,238	△7,342
		03	행사운영비	37,496	39,896	△2,400
		11	지급수수료	1,522,605	1,581,958	△59,353
						· 신규직원 공개채용 위탁수수료 집행잔액 감액 (△20,000천원) · 청소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감액(△37,400천원) · 방역소독 수수료 등 집행잔액 감액(△1,953천원)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금회추경액 (A - B)	주요 증감내역	
관	항	세항	목	세목			
			12 교육훈련비	23,748	25,942	△2,194	· 각종 직원 교육비 집행잔액 감액(△2,194천원)
			13 임 차 료	311,071	311,918	△847	· 부서별 사무기기 임차료 집행잔액 감액(△847천원)
			15 복리후생비	613,231	614,881	△1,650	· 임직원 근무복 집행잔액 감액(△1,650천원)
			16 광고선전비	10,472	18,172	△7,700	· 각종 광고선전비 집행잔액 감액(△7,700천원)
			21 공공요금및 제 세	581,260	587,840	△6,580	·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집행잔액 감액(△2,512천원) · 경륜선수 상해보험료 등 집행잔액 감액(△4,068천원)
			22 차량·선박비	9,848	11,759	△1,911	· 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감액(△1,011천원) · 차량 정비비 등 집행잔액 감액(△900천원)
		202 여 비	17,000	15,000	2,000		· 국내여비 부족분 증액(2,000)
		204 직무수행경비	139,970	141,225	△1,255		· 일반직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감액(△785천원) · 일반직 직책수행비 불용액 감액(△470천원)
		206 재 료 비	304,813	307,973	△3,160		· 커피 자동판매기 재료 구입 등 집행잔액 감액(△3,160천원)
		214 수선유지교체비	197,310	217,915	△20,605		· 경륜장 옥외화장실 화재피해 복구공사 집행잔액 감액(△7,300천원) · 서버 등 전산시스템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감액(△10,305천원) · 통신장비 관련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감액(△3,000천원)
		215 동 력 비	817,915	833,926	△16,011		· 전기요금 집행잔액 감액(△12,011천원) · 도시가스 사용료 집행잔액 감액(△4,000천원)
		301 일반보전금	7,323,304	7,324,549	△1,245		
		12 기 보 상 타	7,323,304	7,324,549	△1,245		· 2022년 선수상금 부족분 증액(7,655천원) · 불법경륜 등 제보자 보상비 미집행액 감액(△5,400천원) · 발매사고 공단부담금 등 집행잔액 감액(△3,500천원)
		303 포상금	2,400	2,500	△100		· 친절우수 직원 포상금 집행잔액 감액(△100천원)
		304 연금부담금등	686,837	700,037	△13,200		
		01 연 부 담 금	257,472	262,872	△5,400		·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감액(△5,400천원)
		02 국민건강 보 험 부담금등	429,365	437,165	△7,800		· 국민건강보험부담금(요양보험포함) 집행잔액 감액(△4,300천원) · 고용보험금 집행잔액 감액(△3,000천원) ·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집행잔액 감액(△500천원)
		726 상품매입비	350,638	356,638	△6,000		· 자동판매기 음료구입비 등 집행잔액 감액(△6,000천원)
		800 예비비	244,457	10,000	234,457		
		01 일반예비비	244,457	10,000	234,457		· 각 예산과목별 집행잔액분(△234,457천원)을 예비비로 편성

## ○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증·감액 내역)

(단위: 천원)

관	항	세항	목	세목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금회추경액 (A - B)	주요 증감내역
총 계(A+B)					5,800,000	6,200,000	△400,000	
700 사업비용(A)					5,336,500	5,736,500	△400,000	
710 영업비용					5,275,949	5,736,500	△460,551	
722 대행사업비					5,275,949	5,736,500	△460,551	
100 인건비					3,542,253	3,786,804	△244,551	
101 인건비					3,065,453	3,387,453	△322,000	
01 보수			385,817	495,817	△1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직 보수 집행잔액 감액(△70,000천원)</li> <li>직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감액(△40,000천원)</li> </ul>
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550,557	2,762,557	△21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직 급여 집행잔액 감액(△135,000천원)</li> <li>주휴수당 집행잔액 감액(△20,000천원)</li> <li>야간근무수당 집행잔액 감액(△20,000천원)</li> <li>연차수당 부족분 증액(3,000천원)</li> <li>교통비 등 각종 수당 집행잔액 감액(△40,000천원)</li> </ul>
107 퇴직급여			398,300	332,751	65,5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급여 부족분 증액(65,549천원)</li> </ul>
109 평가급 및 성과급 등			78,500	66,600	1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도 퇴직자(2명) 평가급 지급(11,900천원)</li> <li>&lt;행안부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근거&gt;</li> <li>- 2022년도분 평가급을 2021년도 실적(지급률 180%)으로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가능</li> </ul>
200 물 건 비			1,352,516	1,568,516	△216,000			
201 일반운영비			828,346	951,346	△123,000			
01 사무관리비			80,391	87,391	△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비자 시민모니터 회의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감액(△7,000천원)</li> </ul>
11 지급수수료			116,653	152,653	△3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비자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수수료 집행잔액 감액(△30,000천원)</li> <li>신규직원 공개채용 위탁수수료 미집행분 감액(△6,000천원)</li> </ul>
12 교육훈련비			20,690	24,690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안전 및 균골격계 예방교육비 집행잔액 감액(△4,000천원)</li> </ul>
15 복리후생비			118,195	128,195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절휴가비 집행잔액 감액(△7,000천원)</li> <li>공무직 자기계발비(복지포인트) 집행잔액 감액(△3,000천원)</li> </ul>
21 공공요금 및 세			266,168	302,168	△3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비자 키오스크 등 정보통신망 사용료 집행잔액 감액(△30,000천원)</li> <li>누비자 업무용 차량 종합보험료 집행잔액 감액(△6,000천원)</li> </ul>
22 차량·선박비			215,066	245,066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감액(△30,000천원)</li> </ul>
214 수선유지교체비			391,950	475,950	△8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비자 정비용 부품구입 집행잔액 감액(△20,000천원)</li> <li>가변시트 포스트 구입 집행잔액 감액(△45,000천원)</li> <li>누비자 프레임 구입 등 집행잔액 감액(△19,000천원)</li> </ul>
215 동력비			78,300	87,300	△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비자 터미널 운영 전기사용요금 등 집행잔액 감액(△9,000천원)</li> </ul>
800 예비비				60,551	0	60,551		
01 일반예비비				60,551	0	60,551		
700 자본예산(B)				463,500	463,500	0		자본예산 변동 없음

○ 주민참여예산 대행사업비(증·감액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금회추경액 (A - B)	주요 증감내역	
관	항	세항	목					
200	자본적지출			93,541	100,000	△6,459		
	230	유형자산취득			93,541	100,000	△6,459	
	231	토지			93,541	100,000	△6,459	
		01	시설비	93,541	100,000	△6,459	· 자전거 주행교육장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6,459천원)	

의안번호	제3호
의안제목	2022년도 노·사 임금 협상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사회부의안

## 1. 제안이유

- 2022년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 개정**
  - 2022년 지방공기업 임금 인상률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1.4%이나, 노사상생 협력으로 0.2% 절감한 1.2% 반영
  - <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
    - 총인건비 한도 내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기관이 자율 결정
    -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 재차 신설 금지
    - 공통 지급 제수당 기본급화는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
  - 공무직 임금은 직무에 따라 1.38% ~ 3.93% 인상
    - 최저시급 8,720원 ⇒ 9,160원(전년대비 5% 인상 감안)
  - 일반직 직무수당 조정 및 연봉계약직 장기근속수당 신설

## 2. 주요내용

- 연봉계약직직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11조제2항 신설 : 장기근속 수당(일반직과 동일 적용)
  - 별표 1〔경륜사업 연봉계약직직원 채용자격기준 및 연간보수 지급한도액(원)〕 일부개정
    - “기” 급 삭제 : 최저임금 이하로 인한 연보수액의 현실화
  - 별표 1-1〔공영자전거사업 연봉계약직직원 채용자격기준 및 연간보수 지급한도액(원)〕 일부개정
    - “기” 급 삭제 : 최저임금 이하로 인한 연보수액의 현실화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표 5 및 별표 5의2 일부개정
  - 2022년도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표 개정

## 보수규정

- 별표 1〔직원 봉급 기준표〕 일부개정
- 별표 7〔제수당 지급 기준표〕 일부개정
  - 일반직 직무수당 5%를 기본급으로 산입

## 3. 참고내용

---

- 신·구 조문 대비표
- 신·구 별표 대비표

## 연봉계약직직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연봉계약직직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봉계약직직원의 장기근속수당은 보수규정 “별표 3”의 경력과 공단 재직기간을 합산한 근무연수로 산정하되, 보수규정 “별표 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1 및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연봉계약직직원 보수 한도)  ① 연봉계약직직원의 보수는 “별표 1” 및 “별표 1-1”에서 정한 보수한도액과 같으며, 통상임금은 일반직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연봉계약직직원 보수 한도)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② 연봉계약직직원의 장기근속수당은 보수규정 “별표 3”의 경력과 공단 재직기간을 합산한 근무연수로 산정하되, 보수규정 “별표 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u>
<u>③ 연봉계약직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당직수당 등은 보수규정 “별표 7”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u>	<u>③ 연봉계약직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당직수당 등은 보수규정 “별표 7”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u>
<u>④ 연봉계약직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리후생규정 “별표 1”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④ 연봉계약직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리후생규정 “별표 1”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⑤ 삭 제</u>	<u>⑤ 삭 제</u>
<u>⑥ 삭 제</u>	

[별표 1] <개정 2004. 10. 7, 2011. 3. 24, 2013. 3. 18, 2015. 12. 22>

경륜사업 연봉계약직직원 채용자격기준 및 연간보수 지급한도액(원)

구분	자격기준	연보수지급 한도액(상근)
갑	1. 경륜·경정 관련분야 재직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기사 등 자격 소지자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3. 그 밖에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4,160,000 (월: 3,680,000)
을	1. 경륜·경정 관련분야 재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기사 등 자격 소지자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3. 그 밖에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8,400,000 (월: 3,200,000)
병	1. 경륜·경정 관련분야 재직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기사 등 자격 소지자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그 밖에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2,400,000 (월: 2,700,000)
정	1. 경륜·경정 관련분야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기사 등 자격 소지자로 당해분야 재직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 분야 재직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7,600,000 (월: 2,300,000)
무	1. 경륜·경정 관련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기사 등 자격 소지자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분야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모니터 조작 및 운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1,840,000 (월: 1,850,000)

※ 특수경력 및 관리·운영부분의 필수인력은 연보수액을 감안 유사수준으로 채용할 수 있다.

[별표 1-1] <신설 2015. 12. 22>

공영자전거사업 연봉계약직직원 채용자격기준 및 년간보수 지급한도액

구분	자    격    기    준	연보수지급 한도액(상근)
갑	1. 해당 분야 기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12년 이상, 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2. 자전거조립 및 정비분야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3.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4,160,000 (월: 3,680,000)
을	1. 해당 분야 기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2. 자전거조립 및 정비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3.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8,400,000 (월: 3,200,000)
병	1. 해당 분야 기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8년 이상, 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자전거조립 및 정비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2,400,000 (월: 2,700,000)
정	1.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2. 자전거조립 및 정비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3.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7,600,000 (월: 2,300,000)
무	1. 전산 관련 프로그램 개발 5년 이상인 자 및 공영자전거 시스템관련기관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자전거조립 및 정비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1,840,000 (월: 1,850,000)

※ 특수경력 및 관리·운영 부분의 필수인력은 연보수액을 감안 유사수준으로 채용할 수 있다.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및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제45조 관련) <개정 2016. 11. 28, 2017. 11. 20, 2017. 12. 26, 2018. 8. 28, 2019. 11. 15, 2020. 12. 24, 2021. 9. 28, 2021. 12. 29>

### 경륜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표

(단위: 원)

분류 / 호봉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6호봉	7호봉	8호봉	9호봉	10호봉
관리원	96,300	96,800	97,300	97,800	98,300	98,800	99,300	99,800	100,300	100,800
수납원	74,900	75,400	75,900	76,400	76,900	77,400	77,900	78,400	78,900	79,400
발매원, 운영보조원	72,400	72,900	73,400	73,900	74,400	74,900	75,400	75,900	76,400	76,900
안전원	104,500	105,100	105,700	106,300	106,900	107,500	108,100	108,700	109,300	109,900
전산관리보조원	98,100	98,600	99,100	99,600	100,100	100,600	101,100	101,600	102,100	102,600
통신보조원	91,000	91,500	92,000	92,500	93,000	93,500	94,000	94,500	95,000	95,500
조리사 / 영양사	74,200	74,700	75,200	75,700	76,200	76,700	77,200	77,700	78,200	78,700
조리원	72,500	73,000	73,500	74,000	74,500	75,000	75,500	76,000	76,500	77,000
장비·시설관리원 경륜심판원	88,100	88,700	89,300	89,900	90,500	91,100	91,700	92,300	92,900	93,500
산업안전원	106,500	107,100	107,700	108,300	108,900	109,500	110,100	110,700	111,300	111,900

- ※ 1. 중(석)식 보조비: 6,000원, 교통비: 6,000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2. 호봉기준은 최고10호봉으로 하고, 장기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가산금을 지급한다.  
(6~10년차: 1일 1,000원, 11~15년차: 1일 2,000원, 16~20년차: 1일 4,000원, 20년차 초과: 1일 5,000원)

[별표 5의2] (제45조 관련) <개정 2016. 11. 28, 2017. 11. 20. 2017. 12. 26, 2018. 8. 28, 2019. 11. 15, 2020. 12. 24, 2021. 12. 29>

### 공영자전거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표

(단위: 원)

분류 / 호봉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6호봉	7호봉	8호봉	9호봉	10호봉
시스템 관리원	77,400	77,900	78,400	78,900	79,400	79,900	80,400	80,900	81,400	81,900
배송(운전)·정비원	76,900	77,400	77,900	78,400	78,900	79,400	79,900	80,400	80,900	81,400
배송(운전)·정비보조원	72,400	72,900	73,400	73,900	74,400	74,900	75,400	75,900	76,400	76,900
상담원	72,700	73,300	73,900	74,500	75,100	75,700	76,300	76,900	77,500	78,100
정산원	73,000	73,500	74,000	74,500	75,000	75,500	76,000	76,500	77,000	77,500
교육강사	106,400	106,900	107,400	107,900	108,400	108,900	109,400	109,900	110,400	110,900
교육강사보조	72,400	72,900	73,400	73,900	74,400	74,900	75,400	75,900	76,400	76,900

- ※ 1. 중(석)식 보조비: 6,000원, 교통비: 6,000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2. 호봉기준은 최고10호봉으로 하고, 장기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가산금을 지급한다.  
(6~10년차: 1일 1,000원, 11~15년차: 1일 2,000원, 16~20년차: 1일 4,000원, 20년차 초과: 1일 5,000원)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8조 관련)

### 직원 봉급 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155,300	2,969,200	2,803,800	2,477,500	2,280,200	2,111,900	1,919,900	1,738,800	1,578,900
2			2,879,000	2,579,600	2,371,500	2,197,500	2,002,600	1,813,500	1,652,100
3			2,983,800	2,682,500	2,466,400	2,288,700	2,088,700	1,896,700	1,730,800
4			3,087,500	2,789,800	2,566,700	2,381,000	2,179,800	1,988,000	1,823,400
5			3,188,400	2,914,200	2,684,600	2,493,500	2,288,000	2,093,100	1,928,700
6			3,303,400	3,022,900	2,793,900	2,596,200	2,385,200	2,185,000	2,016,100
7			3,415,700	3,140,300	2,901,000	2,697,700	2,476,100	2,268,800	2,089,800
8			3,526,700	3,254,100	3,009,100	2,793,100	2,564,800	2,347,000	2,161,800
9			3,637,300	3,371,400	3,114,100	2,885,400	2,650,700	2,424,500	2,233,500
10			3,746,700	3,482,900	3,212,200	2,977,600	2,733,600	2,502,900	2,304,200
11			3,857,300	3,590,100	3,309,100	3,060,700	2,812,400	2,574,100	2,373,400
12			3,965,900	3,688,300	3,399,400	3,143,700	2,893,100	2,647,700	2,442,300
13			4,065,500	3,784,000	3,489,400	3,225,600	2,965,300	2,717,000	2,506,700
14			4,158,100	3,876,700	3,575,500	3,306,500	3,041,600	2,788,800	2,574,100
15			4,245,800	3,969,500	3,663,100	3,385,500	3,118,300	2,859,500	2,638,900
16			4,333,500	4,053,200	3,739,600	3,456,600	3,186,400	2,923,800	2,708,300
17			4,413,100	4,131,100	3,813,100	3,526,100	3,253,000	2,990,400	2,772,200
18			4,489,200	4,207,200	3,883,700	3,592,300	3,316,500	3,051,600	2,829,800
19			4,559,600	4,278,100	3,953,200	3,656,200	3,376,300	3,109,900	2,888,800
20			4,631,100	4,351,900	4,021,700	3,723,500	3,444,500	3,175,500	2,954,400
21			4,695,100	4,418,700	4,084,500	3,807,600	3,500,400	3,202,400	3,006,900
22			4,754,400	4,478,200	4,143,200	3,837,200	3,550,800	3,282,800	3,059,000
23			4,808,000	4,536,900	4,198,800	3,891,300	3,603,500	3,331,500	3,109,500
24			4,861,400	4,591,600	4,252,600	3,941,900	3,653,900	3,379,900	3,151,700
25			4,908,000	4,646,500	4,306,400	3,993,500	3,703,300	3,427,100	3,201,000
26			4,958,200	4,696,400	4,358,200	4,041,600	3,745,300	3,467,800	3,232,100
27			5,002,800	4,744,200	4,400,500	4,085,900	3,788,200	3,502,100	3,267,400
28			5,044,200	4,789,500	4,446,400	4,130,600	3,827,100	3,542,600	3,307,500
29			5,085,900	4,829,100	4,488,100	4,169,600	3,868,900	3,578,800	3,340,500
30			5,126,000	4,870,100	4,526,900	4,211,500	3,906,300	3,613,600	3,374,300
31				4,909,400	4,564,400	4,247,700	3,943,600	3,649,600	3,409,600
32				4,946,200					

※ 이사장 기본연봉은 창원시장의 승인금액으로 계약체결하고, 상임이사 기본연봉은 이사장과의 계약체결에 따른다.

[별표 7] <개정 2001. 6. 15, 2002. 3. 16, 2004. 1. 1, 2004. 10. 7, 2005. 12. 28, 2007. 12. 28, 2008. 3. 6, 2009. 12. 24, 2010. 8. 26, 2011. 3. 24, 2013. 11. 21, 2016. 11. 28, 2017. 12. 26, 2018. 8. 28, 2021. 12. 29>

## 제수당 지급기준표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제46조의3 제외)]

구 분	지 급 율 및 지 급 금 액	비 고																																				
기 술 업 무 수 당 (가 산 금 포 함)	<p>(기술업무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경력3년이상: 월 50,000원</li> <li>•실무경력1년이상~3년미만: 월 30,000원</li> <li>•운전원: 월 40,000원</li> <li>•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월 50,000원</li> <li>•기사, 기능장: 월 30,000원</li> <li>•산업기사: 월 20,000원</li> </ul>	<p>•지급대상: 전산, 방송, 시설 등 직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근무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2이상의 기술자격소지에 대하여는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p>																																				
정 근 수 당	<p>•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 7월 월봉급액 및 근무년수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을 계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지급 제한사항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p> <p>•지급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근 무 연 수</th> <th>지급률(월 봉급액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년미만</td> <td>미지급</td> </tr> <tr> <td>1년이상 2년미만</td> <td>5%</td> </tr> <tr> <td>2년이상 3년미만</td> <td>10%</td> </tr> <tr> <td>3년이상 4년미만</td> <td>15%</td> </tr> <tr> <td>4년이상 5년미만</td> <td>20%</td> </tr> <tr> <td>5년이상 6년미만</td> <td>25%</td> </tr> <tr> <td>6년이상 7년미만</td> <td>30%</td> </tr> <tr> <td>7년이상 8년미만</td> <td>35%</td> </tr> <tr> <td>8년이상 9년미만</td> <td>40%</td> </tr> <tr> <td>9년이상 10년미만</td> <td>45%</td> </tr> <tr> <td>10년이상</td> <td>50%</td> </tr> </tbody> </table>	근 무 연 수	지급률(월 봉급액 기준)	1년미만	미지급	1년이상 2년미만	5%	2년이상 3년미만	10%	3년이상 4년미만	15%	4년이상 5년미만	20%	5년이상 6년미만	25%	6년이상 7년미만	30%	7년이상 8년미만	35%	8년이상 9년미만	40%	9년이상 10년미만	45%	10년이상	50%	<p>(가산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근무연수</th> <th>지급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20년 이상</td> <td>100,000원</td> <td rowspan="4">(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 하여 지급한다.</td> </tr> <tr> <td>15년 이상 20년 미만</td> <td>80,000원</td> </tr> <tr> <td>10년 이상 15년 미만</td> <td>60,000원</td> </tr> <tr> <td>5년 이상 10년 미만</td> <td>50,000원</td> </tr> </tbody> </table> <p>※ 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직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li> <li>2. 근무연수라 함은 실제 창원레포츠파크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li> <li>3. 연봉계약직원 역시 위 지급기준에 준한다.</li> </ol>	근무연수	지급액	비 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 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근 무 연 수	지급률(월 봉급액 기준)																																					
1년미만	미지급																																					
1년이상 2년미만	5%																																					
2년이상 3년미만	10%																																					
3년이상 4년미만	15%																																					
4년이상 5년미만	20%																																					
5년이상 6년미만	25%																																					
6년이상 7년미만	30%																																					
7년이상 8년미만	35%																																					
8년이상 9년미만	40%																																					
9년이상 10년미만	45%																																					
10년이상	50%																																					
근무연수	지급액	비 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 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시 간 외 근 무 수 당	•통상임금 × (1.50 ÷ 209) × 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함																																				
휴 일 근 무 수 당	•통상임금 × (1.50 ÷ 209) × 시간	〃																																				
야 간 근 무 수 당	•통상임금 × (1.50 ÷ 209) × 시간	〃																																				
연 차 수 당	•연차수당: 통상임금 × (1 ÷ 209) × 일수 × 8시간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함																																				
자 녀 학 비 보 조	•중·고등학생 : 학비전액	임·직원, 계약직																																				
당 직 수 당	•일직·숙직 1회 : 60,000원																																					
직 무 수 당	•임 원 : 봉급의 15%이내																																					
위 협 근 무 수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갑종(전기 취급) : 월 30,000원</li> <li>•을종(보일러, 위험물취급, 송수신기 조작 또는 수리) : 월 20,000원</li> </ul>	전기: 3,300볼트이상 고압 송수신기 조작 또는 수리 : 220볼트 이상																																				
출 납 수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4급 : 월 30,000원이내</li> <li>•5급이하 : 월 20,000원이내</li> </ul>																																					
방 송 전 산 수 당	<삭 제>																																					
경 주 수 당 및 공 영 자 전 거 수 당	<삭 제>																																					
봉 급 조 정 수 당	<삭 제>																																					
기 타 수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호사 : 월 30,000원</li> <li>•경륜클리닉 상담사 : 월 30,000원</li> <li>•경륜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장 : 월 200,000원</li> <li>- 심판(검차포함)업무종사자: 월 80,000원</li> </ul> </li> </ul>																																					

의안번호	제4호
의안제목	연봉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사회부의안

---

## 1. 제안이유

---

### 4급 팀장(연봉제)에서 3급 팀장(연봉제)으로 승진 시 승진가산급 책정

- 직위부여자인 4급 연봉제에서 3급 연봉제로 승진 시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의 봉급인상액 기준 마련
  - \* 4급 연봉제 대상자가 3급 연봉제 대상자로 직급 승진 시 승진가산급 미책정으로 동일 임금지급
    - 이전 연봉제 4급 직원이 연봉제 3급 직원으로 승진한 사례가 없기에 별도 기준 재정립 필요

## 2. 주요내용

---

### 별표 4 [승진가산급] 일부 개정

- 연봉제 2급 ⇒ 1급 승진가산급 삭제(1급 정원 부재)
- 연봉제 4급 ⇒ 3급 승진 시 승진가산급 신설

## 3. 참고내용

---

### 신·구 별표 대비표

## 연봉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연봉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

## 승진 가산급

(단위 : 원)

구 분	승진 가산급
3급에서 2급 승진 시	2,397,600
<u>4급에서 3급 승진 시</u>	<u>1,620,000</u>

1. 가산방법 : 연도중 연봉제 대상자에 대하여 월(일)할 계산
2. 4급연봉제 승진 가산급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

의안번호	제5호
의안제목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 사회부의안

## 1. 제안이유

### □ 경주종사원 등의 경주사업 공정성 및 건전성 훼손방지를 위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 관련근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구매한도 위반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회의 결과반영

#### 【 회의 개요 】

가. 일시/장소 : 2022. 8. 25.(목), 13:30 ~ / 정부과천청사 사감위 대회의실

나. 논의안건 : 발매직원 등의 구매한도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방안 등

#### 다. 참석

- 사 감 위 : 감독지도과장(주재), 사무관, 전문위원 등 5명
- 사 업 자 :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레포츠파크, 부산스포원 등 7개 기관  
사감위 업무부서 관계자

#### 라. 결 과

- 사업자별 발매직원 등의 구매한도 위반 등에 대한 징계조항 마련
- 사업자별 통일된 규정 조문 마련

## 2. 주요내용

### □ 경주종사원 등의 경주사업 공정성 및 건전성 훼손 시 징계가능 조항 신설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마련
  - 제35조(징계 사유)제1항제13호 신설

## 3. 참고사항

### □ 신·구조문대비표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경주사업의 공정성 및 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징계 사유)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 ‘징계 의결요구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1. ~ 12. (생략)</p> <p><u>&lt;신 설&gt;</u></p> <p>② (생략)</p>	<p>제35조(징계 사유) ① (현행과 같음)</p> <p>1. ~ 12. (현행과 같음)</p> <p><u>1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경주사업의 공정성 및 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의안번호	제6호
의안제목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 사회부의안

---

## 1. 제안이유

---

### 관련 법률 개·제정에 따른 주요사항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시행)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정(2022.01.27.시행) 관련 주요사항 변경
  - 제안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안전관리 규정 작성)

## 2. 주요내용

---

### 개정내용

- 제1조 및 제2조 일부개정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목적 및 적용범위 확대
- 제4조의2 신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목표 및 방침 수립 추가
- 제9조의2 신설 : 부서별 안전보건담당자 역할 추가
- 제13조의2 신설 :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에 따른  
공단 안전근로협의체 설치 및 운영 내용 추가

## 3. 참고사항

---

### 신·구조문대비표

### 신·구별표대비표

##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규정 안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레포츠파크(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 등의 안전과 보건·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적용하며,”를 “적용하고, 공단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며,”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보건 방침) ① 공단은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②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해 매년 안전보건 기본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안전보건 담당자) ① 관리감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보좌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안전보건 담당자는 건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감독자에게 알리고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2(안전근로협의체 설치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단과 수급업체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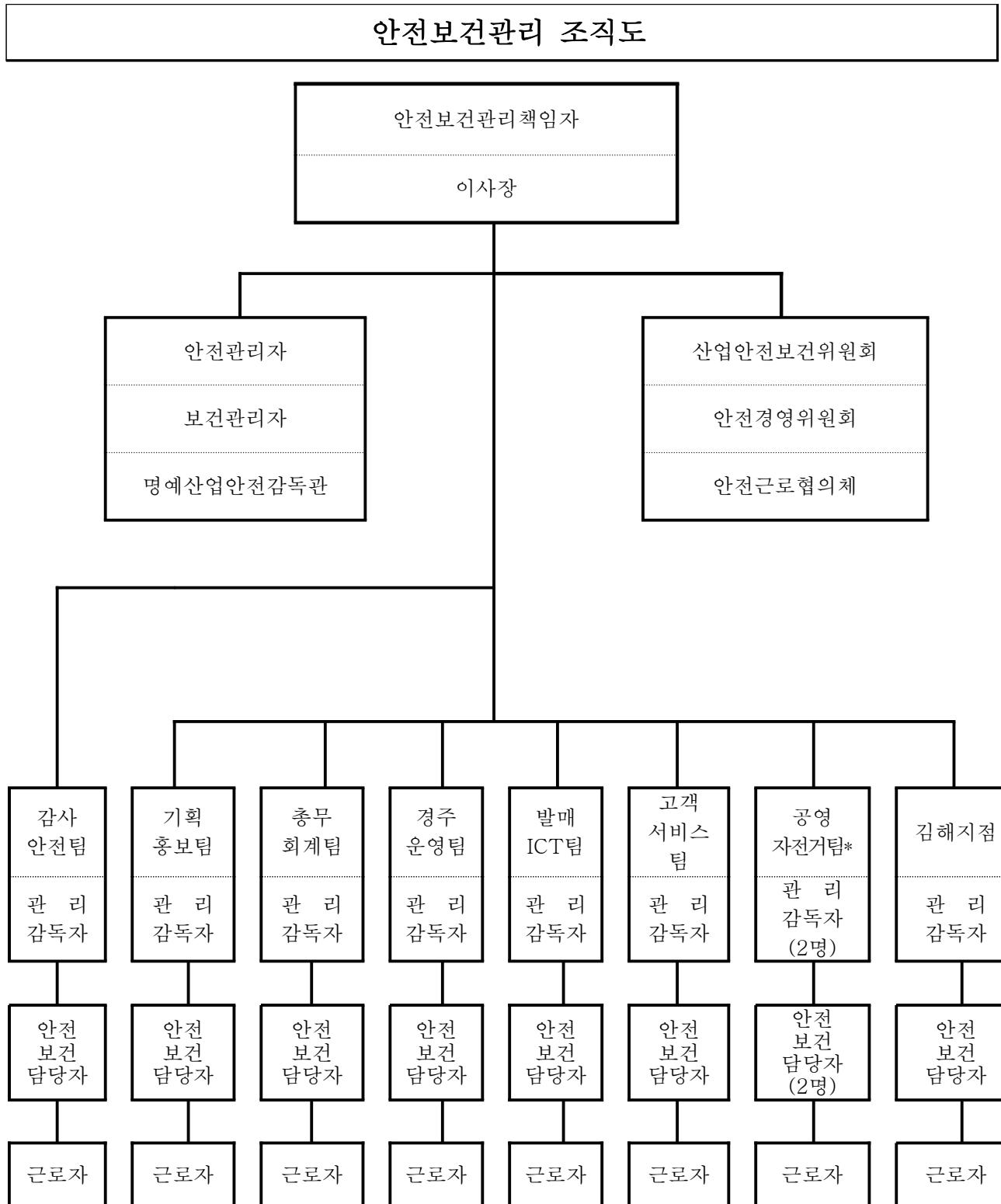
1. 협의체는 3개월 이상 공단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그 노무를 제공 받는 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안전 지원을 협의하며 그 결과를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협의체가 협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공영자전거팀은 작업장소의 위치 구분에 따른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담당자를 각각 선임운영

[별지 제1호 서식]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b>안전보건 교육훈련 일지</b>					
교육의 구분	1. 신규채용 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				
교 육 명	산업안전보건법	강 사	관리감독자 :		
교육일시	20 . . .				
교육장소		교육인원	대상/참석/미참석 :      명/      명/      명		
주 요 교 육 내 용					
효과성 평가	1. 평가방식 : <input type="checkbox"/> 질문 <input type="checkbox"/> 실습 <input type="checkbox"/> 실험 <input type="checkbox"/> 기타( )				
	2. 평가결과 :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미흡 ( )				
	3. 평가결과 미흡자에 대한 조치사항 :				
	4. 재평가 결과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미흡				
기타 의견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레포츠파크(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레포츠파크(이하 “공단”이라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 등의 안전과 보건·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단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단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u>공단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며,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제4조의2(안전보건방침) ① 공단은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방침을 설정해야한다.

②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해 매년 안전보건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신 설>

제9조의2(안전보건담당자) ① 관리감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보좌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건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감독자에게 알리고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제13조의2(안전근로협의체 설치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단과 수급업체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별도로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1. 협의체는 3개월 이상 공단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그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안전 지원을 협의하며 그 결과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협의체가 협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